

의안번호	2200980
의 퇴 인	한정애 의원
회 답 일	2024.7.4.
추 계 번호	24B140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2,600만원, 2030년 8억 2,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1억 3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826	826	826	826	826	4,131	826

- 주: 1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	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. 이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56조의2(특별사고조사 등)	고용노동부장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(이하 “특별사고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사고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특별사고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사고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됨(제3항)	의무규정
		특별사고조사의 방법·절차 및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·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(제4항)	
3	안 제165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	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특별사고조사 및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4	안 제175조(과태료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3항) 1의2.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사고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	—	· 미대상 – 개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‘공단’)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와 이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에 따라 발생함 –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와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이 법률에 규정되더라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– 현재 공단은 「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」 1)에 근거하여 중대재해원인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며, 공단 소속 직원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6조²⁾에 따라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질문,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시행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공단의 참여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더라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56조의2(특별사고조사 등)	○	—

1) 제11조(감독반의 편성)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계여부	비고(주계 미 실시 사유)
3	안 제165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	—	• 미대상 – 개정조항은 특별사고조사 및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업무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공단) 위탁될 가능성이 있음 – 그러나 공단은 출연기관으로 기관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비와 임차료,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고,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가 별도로 편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개정조항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– 참고로 공단은 중대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「근로감독관 직무규정」³⁾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고 있고,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나 ‘사고성 재해 집중관리’, ‘화학사고 재해 집중관리’ 등 내역사업 예산 중 일부를 관련 경비로 사용하고 있음
4	안 제175조(과태료)	—	• 미대상 –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⁴⁾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(이하 "지도사"라 한다), 관련학과 교수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직원 등 관계전문가(이하 "관계전문가"라 한다)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- 2) 제156조(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,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- 3) 제11조(감독반의 편성)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(이하 "지도사"라 한다), 관련학과 교수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직원 등 관계전문가(이하 "관계전문가"라 한다)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4) 제2조(정의) 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 (이하 생략)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별사고조사 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- 비용추계 대상은 “특별사고조사를 위한 특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 건별 운영비에 특별사고 조사건수를 곱하여 산출함
 - (운영비) 개정안은 특별사고조사의 방법·절차 및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우나,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
 - 운영비는 “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”를 기준(2019년 2억 7,540만원 소요)으로 산출
 - 추계기간 동안 운영비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
- ※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상세내역
 - (구성) 각계 전문가, 시민단체 대표 등 14명 내외로 구성
 - (운영) 위원회를 2개팀(관리경영, 안전기술)으로 구분, 사무국(안전공단) 운영
 - * 사고통계분석, 설문 및 현장조사,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, 회의수당 지급 등
 - (예산) 약 275,400천원(수당, 여비, 임차비, 공공요금 등)⁵⁾
- (조사건수) 개정안은 특별사고조사의 방법·절차 및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래에 발생할 특별사고조사 건수를 추정하기 어려우나, 본 추계서는 연 3건으로 가정함
 - 장래에 발생할 특별사고조사 건수를 연 3건으로 가정한 이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“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”이

5) 자료: 고용노동부

연간 2~3건이라는 점을 준용한 결과

[표 2]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: 2018~2022년

(단위: 개소)

	2018	2019	2020	2021	2022
사업장 수	3	3	2	3	2

자료: 1.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-567호

2.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-622호

- 참고로 중대재해란,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⁶⁾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공단)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「근로감독관 집무규정」⁷⁾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고 있음
 - 1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 - 2.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
 - 3.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⁸⁾
- 추계결과,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2,600만원, 2030년 8억 2,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1억 3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추가재정소요 산출내역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운영비(A)	275	275	275	275	275	—	—
개소수(B)	3	3	3	3	3	—	—
추가재정소요(C=A×B)	826	826	826	826	826	4,131	826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6)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중대재해”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.

7) 제11조(감독반의 편성)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(이하 "지도사"라 한다), 관련학과 교수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직원 등 관계전문가(이하 "관계전문가"라 한다)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8)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장래에 발생할 특별사고조사 건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